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계약)

계약자	매수자	상 호 명	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 표 자	000	전 화 번 호	00-000-0000		
		주 소	000				
	매도자	발 전 소 명	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 표 자	000	전 화 번 호	00-000-0000		
		주 소	000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태양광발전			
			설 비 용 량	00.0kW			
			소 재 지	00	00		
			가 중 치	0.0			
계약내용	계 약 기 간 (발전월)		20XX. XX. XX~ 20XX. XX. XX		정산월 : 매년 X월		
	계 약 단 가		0원/REC		0원/MWh		
	계 약 매 매 량 (예상)		총 0 REC / XX년 (X.X REC / 월)		총 0 MWh / XX년 (X MWh / 월)		
	계 약 보 증 금		없음 (면제사유 : 별도 수의계약을 통한 추가구매 계약금 지급으로 상쇄)				
	* 매매량 및 계약단가 변동에 관한 사항은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공급인증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약대상 발전설비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계약내용에 따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XX 년 X월 XX일

매 수 자      XXX (인)

매 도 자      XXX (인)

※ 첨부서류: 계약 일반조건 등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일반조건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매도인”와 “매수인”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REC 거래 형태)

“매도인”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이라고만 함)를 생산하고 취득한 소유자로서 본 계약에 따라 REC를 “매수인”에게 판매하고 “매수인”은 이를 본 계약에 따라 매수한다.

## 제3조 (REC의 거래 수량 및 단가)

- (1)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할 REC의 계약 단가 및 계약 매매량은 매매계약서 본문에 정한 바에 따른다(이하 본 계약상 거래 대상인 REC를 “대상 REC”라 한다).
- (2) 매수자는 구매일 전 12개월간의 전기사용량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매도인에게 대상 REC 계약매매량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매수자는 거래일 10영업일 전까지 변경 매매량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일반조건 제8조 제3항에 명시된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단가의 변경은 전력거래소가 공개하는 해당연도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매매계약서 본문에 명시된 계약금액 대비 50%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가능하며, 양 당사자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다음연도 계약단가에 반영, 계약을 변경한다.

### 1. REC 현물거래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

$$\begin{array}{ccc} \text{기존} & \text{계약단가} & + \\ & & \frac{\text{해당연도 평균 REC가격} - \text{기존 계약단가}}{2} \\ & & \\ & & \frac{\text{해당연도 평균 REC가격} - \text{기존 계약단가}}{2} = \text{변경 계약단가} \end{array}$$

### 2. REC 현물거래 가격이 감소하는 경우

$$\begin{array}{ccc} \text{기존} & \text{계약단가} & - \\ & & \frac{\text{기존 계약단가} - \text{해당연도 평균 REC가격}}{2} \\ & & \\ & & \frac{\text{기존 계약단가} - \text{해당연도 평균 REC가격}}{2} = \text{변경 계약단가} \end{array}$$

(적용예시) 계약단가가 75,000원인 경우

$$\text{연평균 REC가격이 75,000} + \left(\frac{75,000}{2}\right) \left(\frac{75,000}{2}\right) = 112,500\text{원 초과 시 계약단가 변경}$$

$$\text{연평균 REC가격이 75,000} - \left(\frac{75,000}{2}\right) \left(\frac{75,000}{2}\right) = 37,500\text{원 미만인 경우 계약단가 변경}$$

(산출예시) 연평균 REC가격이 120,000원인 경우의 변경 계약단가:  $75,000 + \frac{120,000-75,000}{2} \frac{120,000-75,000}{2} = 97,500$ 원

연평균 REC가격 35,000원인 경우의 변경 계약단가:  $75,000 - \frac{75,000-35,000}{2} \frac{75,000-35,000}{2} = 55,000$ 원

#### 제4조 (REC의 거래 절차)

- (1)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계약서를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K-RE100시스템에 등록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등록 이후 지체 없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2) “매도인”은 K-RE100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K-RE100시스템을 통해 “매수인”에게 대상 REC에 대한 대금 청구서를 발송한다.
- (3) “매수인”은 위 제2항에 따른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명확히 하건대 “매수인”은 본 항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는 이외에 “매도인”에 대하여 명목을 불문하고 일체의 추가적인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4) “매도인”은 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즉시 대상 REC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제5조 (매도인의 의무)

- (1) “매도인”은 대상 REC가 신재생에너지법 등(명확히 하건대,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REC를 생산하고 취득하는데 있어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된 것으로서, K-RE100시스템을 통한 거래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2) “매도인”은 “매수인”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매도인”은 대상 REC를 “매수인”외의 제3자에게 중복 매도할 수 없고, 대상 REC를 “매수인”외의 제3자에 대하여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제6조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대상 REC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본문에 정한 바에 따른 대금을 “매수인”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 (대금에 대한 이의의 처리)

- (1) “매수인”은 “매도인”이 청구한 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가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대상 REC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대금의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대상 REC의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없다.
- (2) “매수인”이 “매도인”이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도인”이 서면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한다.
- (3) 당사자들이 위 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1개월이 되는 날 해제되고 당사자들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 제8조 (계약의 해지)

-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 당사자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항 및 시정 사항을 명시한 형태로 시정을 요구받고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매도인”이 다른 회사와의 합병, 영업양수도 또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2) “매도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영업정지 처분 기타 본 계약상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용 상태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3) “매도인”이 본 계약상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 허가, 시설 또는 인력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 4)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이 본 계약 및 개별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3) 본 계약 체결 시 본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었던 관련법률, 시장상황에 현저하고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에 따른 본 계약의 변경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요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은 1개월 전의 사전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9조 (계약종료의 효과)

- (1)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금전채무를 청산한다.
- (2) 본 계약이 사유를 불문하고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K-RE100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기대이익의 상실, 계속적 계약관계에 관한 신뢰의 보호, 투자비용의 보상, 영업권,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 당사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4) 일방 당사자가 전 조의 규정에 위반한 보상 또는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이를 방어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그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본 조는 계약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 제10조 (불가항력)

- (1)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정부 시행 규정의 변화, 파업, 공장폐쇄, 공장생산시설의 파손, 테러행위, 전쟁, 화재, 홍수 등을 포함하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 전 항에서 언급된 상황에 처한 당사자는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즉시 상대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이러한 상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동시에 지체 없이 그리고 이러한 의무 재개가 가능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재개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 (3) 만일 위 제1항에서 언급한 상황이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지속될 경우, 전 항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상대 당사자에게 알린 당사자는 주어진 권리나 권한에 대한 어떤 불이익 없이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통지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 (양도 등)**

-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양도하는 당사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의 모든 조항에 구속되며 완전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서면계약을 상대방 당사자와 체결하도록 한다.

### **제13조 (완전한 계약)**

본 계약은 완전한 계약이며 본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모든 사전적인 서면 또는 구두 약정에 우선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 **제15조 (개별성)**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나 부분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판결될 경우에, 해당 조항 또는 부분만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상실할 것이며,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6조 (부분)**

본 계약은 다수의 부분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이렇게 작성하여 전달한 각 부분은 모두 원본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문서를 구성한다.